

의안 번호	2229	<b>[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</b> <b>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. 2. 29(목) 김태욱 의원 외 9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2. 29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3. 13.(수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김태욱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조례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포상대상자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포상 제한 규정 신설(안 제15조)
- 포상 취소 규정 신설(안 제18조)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8조

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명주)

-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 제한 및 취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포상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 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 근거법규

##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**제28조(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유인 검토)**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·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1. 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 및 부령
2.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·예규·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
3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·규칙
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·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·지방공단 등의 내부규정

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